



**Vol. 3**

2023.03.22.

#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11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최지수전임 jschoi@hjcustoms.co.kr

##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일부고시」 일부개정****(1) 개정 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제15조 제1항 제3호)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무선송·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 (제18조)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 (별표 1 제11호 라목)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시행일**

'23.02.03.

**I. 법령 개정사항****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1) 개정 이유**

안전과 관련 없는 표시사항은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문구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제4조 제1호, 제6조 제3호 다록)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건강기능식품 도안 · 문구 표시 완화 (제5조 제1호 다록)	인쇄·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추가 등 스티커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포장재 계속 사용으로 업계 부담 완화

**(3) 시행일**

‘23.02.08.

## I. 법령 개정사항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1) 개정 이유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을 수출자 보관 원산지 증빙서류에서 제외하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요건 중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 위반 사실 확인의 범위에 수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포함되도록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추가 (제7조 제1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요건 중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의무에 생산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수출자의 부담 완화 (제10조 제1항 제2호)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원재료에 대한 수출필증 삭제
	해당 물품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재고관리대장 포함
	생산자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포함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생산자의 부담 완화 (제10조 제1항 제3호)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원재료에 대한 수출필증 삭제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포함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포함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포함

#### (3) 시행일

'23.02.28

## I. 법령 개정사항

##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 (1) 개정 이유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통지 등을 받아 자진신고하는 경우 환급 받은 날부터 자진신고일까지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변경하며,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기로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특법 상 환급 실적이 없는 자가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비적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적용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제14조 제6항 제3호)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여야 하나,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비적용승인 이후 적용승인 신청의 제한기간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제14조 제7항)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면 제한기간(2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비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 추가
환특법 상 환급 신청 기간의 연장 (제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과다환급금 등의 자진 신고 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 변경 (제30조 제3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 (3) 시행일

'23.02.28

## I. 법령 개정사항

##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1) 개정 이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관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등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 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20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제71조의2제3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제72조제4항)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예외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 (제75조 제9호 사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공급 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납세자의 착오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I.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 · 중개 관련 명세 제출 대상 확대 (제121조 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추가함.

**(3) 시행 일자**

'23.02.28

다만, 제68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84조 제5항 제3호 및 제10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I. 법령 개정사항

## 6.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1) 개정 이유

수출입기업 등의 급부·지원 신청 시 납세자 동의에 기반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문·결제 등과 관련한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관계자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와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제공 정보의 범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 제공 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 기준을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 조정 (제16조의2 제3항 제1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의 공표로는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 할 수 있도록 함.
납세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기관 및 정보의 범위 등 (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4까지 및 별표 2의2 신설)	<p>1)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으로, 그 밖의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급부·지원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p> <p>2)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관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p> <p>3)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나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업무담당자의 지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함.</p>

## I.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통합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본부세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제144조의3 부터 제144조의7까지 신설, 현행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9조 삭제)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 및 정보 제공 방법 등 (제258조)	1)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를 물품수신인의 성명, 통관고유번호, 물품의 품명·수량 등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함. * 플랫폼 기업: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2) 플랫폼 기업은 요청받은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물품의 품명, 납부세액,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의 확대 (제261조 제4호의2)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수출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입신고대상에 추가함.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 (제276조의2)	1)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과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정함. 2)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사용 목적·기간 및 이용자 등이 포함된 사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I.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 (제276조의2)	3)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거부 사유를 통보하고,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별표 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가격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함.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 (별표 5 제4호, 별표 6)	1) 특수관계자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거짓제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료의 종류별로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과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 (3) 시행 일자

'23.02.28

## I. 법령 개정사항

## 7.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1) 개정 이유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 오류를 정정할 경우 부과되는 불이익 때문에 정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오류점수 부과가 면제되는 정정 사유를 확대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시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의 정정으로 부과되는 오류점수 상한을 규정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를 정정·취하하려는 경우 그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 보완을 위한 규정 정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사유서 의무 제출 규정 삭제 (제4조)	수출입신고 정정·취하 시 신고인 등은 그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정·취하 신청의 부담 경감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 (제4조 등)	<p>1) 신고인 등이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결과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사전심사(질의)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 *신청 이후 신고분만 면제→신청 전 신고분도 면제</p> <p>2) 신고인 등이 ACVA 승인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ACVA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도 오류점수 면제사유에 포함</p> <p>3)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5~30일)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p> <p>4)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수출신고서의 자발적 정정 유도</p>

## I.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정정 사항	현행	개정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 (제4조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원산지증명서 발급 30일 이내 정정시 오류점수 면제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
	발급협정명	오류점수 부과	오류점수 면제
오류점수 부과 기준 정비 (제8조 등)	<p>1) 신고인이 수출입신고 이후 신고서의 행을 추가·삭제 할 경우 부과되는 오류점수를 란 추가·삭제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와 별도로 명시하고 수출입신고 동일하게 10점으로 적용*</p> <p>2)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검사율 상향 등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규정*</p> <p>*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500점으로 규정(제8조 제3항),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검사비율 상향 적용(제9조 제3항)</p>		
오류점수 확정 절차 정비 (제8조)	<p>신고인 등이 세관장의 세액경정에 대한 불복신청 등으로 부과가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해 불복신청 결과 확정 등의 사유로 점수 확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p> <p>* (현행) 분기만료 후 20일이 경과되기 전에 확정 요청 시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고 있으나, 오류현황 통보서 발송일(10일)과 20일 사이 확정 요청 시 이미 전 분기 오류점수 확정·통보 후로 오류점수 가산 및 재통보 곤란</p>		
특별교육 이수확인 절차 변경 (제11조)	<p>한국관세사회가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기존에는 신고인 등이 직접 관할지 세관장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한국관세사회가 일괄제출하도록 변경</p> <p>※ 신고인 등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재 50% 경감</p>		

## (3) 시행 일자

'23.02.28

## II. 입안예고

##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입안계획

### (1) 입안 이유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요청)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 (제8조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함(매년 11월,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함. 2)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 (별표 2 개정)	1)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 관련 「약사법」 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하여 명확화하고,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와 관련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 (별표 3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물품 추가

---

**II. 입안예고**

구분	내용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제2조, 제7조, 제9조, 제 10조 개정)	타법령 ⇒ 다른 법령 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 류 수정

**(3) 시행 일자**

'23. 3 월 말 시행 예정

---

### III. 조세심판사례

## 1.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000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WHITE BEESWAX 및 YELLOW BEESWAX(밀랍,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한-000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처분청은 한-000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이하 “쟁점물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17 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등에서 연도별 수입신고 각 1 건씩 총 4 건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그 원재료의 구매내역서에 원재료의 원산지가 000 산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위 회신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한 후, 그 중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과세전통지함.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산세 면제 신청을 불승인(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이하 “쟁점③처분”이라 한다)함.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에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 쟁점① · ②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함.

바.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 III. 조세심판사례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닐 수 있음에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3) 결정일

2023.01.10. (조심 2022 관 0058)

## 1. MASSAGE BALL 등 5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MASSAGE BALL; 64mm; 50g ② Massage Ball; 지름 6.7cm ③ RUBBER BALL; 지름 6cm ④ Universal Massage roller; Massage ball; 22*13*21cm ⑤ Massage Ball; MOBIPOINT; 지름 5.1cm
물품 설명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볼(ball), 땅콩볼 형상의 물품으로 필라테스장이나 가정 등에서 혈액순환 개선, 근막이완 등의 목적으로 사용
HS CODE	- 변경 전 : ①②③ 제 9506.69-9000 호 (기본관세 8%) ④⑤ 제 9506.91-0000 호 (기본관세 8%) - 변경 후 : 제 9019.10-2000 호 (WTO 협정관세 0%)
변경 사유	근력증거나 운동능력 향상보다는 근막 등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통한 근육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물품이므로 제 9019.10-2000 호의 '마사지 기기'로 분류 (제 2023년 제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2. CT Injection system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FRLF ILLUMENA PEDESTAL ANGIO POWER INJX1 ② OPTIONE INJECTOR W/PEDISTAL ; 223481 S8472
물품 설명	컴퓨터 단층촬영(CT)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영제의 양을 조절하여 정확한 시간과 압력으로 환자 혈관에 조영제를 자동 주입하는 장비
HS CODE	- 변경 전 : 제 9018.39-8000 호 (기본관세 8%) - 변경 후 : 제 9018.90-8900 호 (기본관세 8%)
변경 사유	함께 제시된 워크스테이션(제어유닛, 모니터+PC)을 통해 환자에게 주입될 조영제 양과 농도를 조절하여 자동 주입하는 기기로, 주사기와는 형상이나 작동원리가 다르므로 제 9018.90-8900 호의 '그 밖의 전기식의 의료기기'로 분류 (제 2023년 제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3. DRIED KIMCHI FLAKES 등 3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Vegetable preparation, dried; DRIED KIMCHI FLAKES; PR.CHNA ② Vegetable preparation, dried; PR.CHNA ③ Vegetable preparation, dried; PR.CHNA
물품 설명	양념된 김치를 저온에서 열풍 건조시켜 소매 포장한 간식·토핑용 제품
HS CODE	- 변경 전 : 제 2005.99-9000 호 (기본 관세: 20%) - 변경 후 : 제 2005.99-1000 호 (기본 관세: 20%)
변경 사유	열풍 건조로 김치의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도 김치를 건조(가공)한 경우에도 김치의 범주로 판단하므로 제 2005.99-1000 호의 '김치' 분류 (제 2023년 제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3.0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4. MASTER BATCH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Other colouring matter; MASTER BATCH SMB YELLOW L-1121 ② Pigment preparations; MASTER BATCH 04-3147; R.KOREA
물품 설명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만든 안료인 'C.I Pigment Brown 24'에, 충진제와 가소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플라스틱 착색제
HS CODE	- 변경 전 : 제 3206.49-9000 호 (WTO 협정관세 6.5%) - 변경 후 : 제 3206.19-0000 호 (WTO 협정관세 6.5%)
변경 사유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만든 안료에 충진제나 가소제 등을 첨가한 착색제이므로 제 3206.19-0000 호의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으로 분류 (제 2023년 제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5. RIGID COUPLING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ECHANICAL TEE HREADED ② RIGID COUPLING
물품 설명	배관과 배관 사이에서 맞닿은 관 구멍을 서로 조여서 연결 ·고정하기 위한 주조한 철강제의 클램프
HS CODE	- 변경 전 : 제 7325.99-1000 호 (기본관세 8%) - 변경 후 : 제 7307.19-0000 호 (기본관세 8%)
변경 사유	관을 벽 부분에 고정·설치하기 위한 행거나 지주 등과는 달리 맞닿은 두 개의 관 구멍을 서로 조여서 연결·고정 하기 위해 사용되는 '클램프(Clamp)'이므로 제 7307.19- 0000 호의 '기타의 주조한 철강제 관 연결구류'로 분류 (제 2023년 제 1회 관세품목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3.0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6. RULE DIE STE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RULE DIE STEEL ; 19MM X 2.0MM BD-HF
물품 설명	코일 형태로 감겨있는 재단용 칼날로, 사용시 일정 길이로 절단하거나 구부려서 원하는 모형 틀에 부착한 후 프레스 기나 수공구 등으로 눌러 가죽이나 고무 등을 절단함 (폭: 19mm, 두께: 2mm, 인장강도 340MPa 이상)
HS CODE	- 변경 전 : 제 7211.90-1000 호 (WTO 협정관세 0%) - 변경 후 : 제 8208.90-000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가장자리를 면취. 연마하여 날(blade)을 세운 제품으로 단순한 길이 절단 또는 구부림 공정 외에는 별도 가공없이 재단용 칼날로 사용되므로 제 8208.90-0000 호의 '그 밖의 기계용이나 기구용의 절단용 칼날'로 분류 (제 2023년 제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7. Sterilizer: FORMOMAT PL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Sterilizer: FORMOMAT PL 349-1
물품 설명	열에 민감한 재질의 기구나 실험복 등을 저온(55~60°C)의 진공상태 챔버에 넣고 Etylene oxide(멸균매체) 가스로 살균하는 장치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 전 : 제 8479.89-9099 호 (할당관세 0%)</li> <li>- 변경 후 : 제 8419.20-0000 호 (WTO 협정관세 0%)</li> </ul>
변경 사유	챔버 내부를 일정 온도(55~60°C)의 감압 상태로 만들어 액체 상태의 멸균매체를 증발하는 방식으로 의료도구 등을 살균하는 장치이므로 제 8419.20-0000 호로 분류 (제 2023년 제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3.0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8. NEO-ACI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Supplementary feed ; NEO-ACID, 1L
물품 설명	포름산, 젖산, 구연산, 물 등을 혼합 조제한 적갈색의 액상 보조사료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 전 : 제 3808.94-0000 호 (WTO협정관세 6.5%)</li> <li>- 변경 후 : 제 2309.90-2099 호 (기본관세 5%)</li> </ul>
변경 사유	살균 성분이 있는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309.90-2099호의 '기타의 보조사료'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2.28.

**IV. 품목분류 변경고시****9. 폐 납축전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폐납축전지
물품 설명	금속성분 등을 추출하고자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형태의 폐 연산(납; Pb) 축전지
HS CODE	- 변경 전 : 제 8549.12-1000 호 (기본 관세: 0%) - 변경 후 : 제 8549.11-0000 호 (기본 관세: 0%)
변경 사유	'수명이 끝난 연산(鉛酸) 축전지'는 제8549.11-0000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호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2.28.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1. 전부처 수출역량 결집 및 100조원 민간투자 밀착지원****-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발표 -**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을 집중지원하며, 최대 최대인 360 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설비 및 R&D 투자 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추진을 예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3대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또한,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함.

- 반도체: 정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메모리·고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5조원 규모 예산을 추진함.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천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천억원, 정책금융 53백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함.
- 디스플레이: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산을 추진함. OLED 및 마이크로 LED, QD(퀀텀닷)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천억원을 공급함.
- 자동차: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 또한,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7년까지 1.4조원을 지원함.
- 조선: 정부는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 지원과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여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함. 또한, 조선사들이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RG 한도 부족시 특례보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대형조선사가 금융기관의 RG분담액 85% 이상 소진시 최대 95%까지 보증하여 지원
- 철강: 정부는 EU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6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함.
- 석유화학: 정부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전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을 패키지 지원하며, 70억불 규모 사인프로젝트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함.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2. 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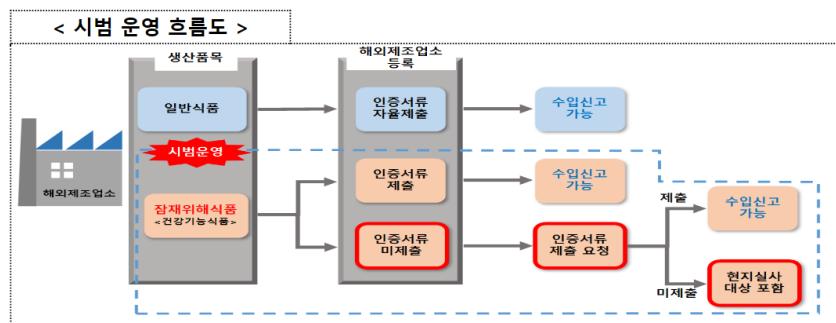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자 등이 사전에 해당 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도입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은 위해도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작년에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품목(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고, 미국 •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제품 생산 시 우수제조시설(GMP) 등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해 인증서 확보에 국내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기능 식품 수입자 등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출국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범사업 운영 기간 중에는 인증서 제출 없이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가능하나,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차년도 현지실사 대상으로 포함해 관리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 착수하고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